

#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동향과 시사점

작성자 : 석민애 대리(minmin@ibk.co.kr / 02-729-6178)

- ◆ '24년 1월 27일(토)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\*(이하 중처법) 적용대상
- ◆ 그러나 대상업체의 인지와 준비는 부족, 중소기업 및 건설업이 최대 위험군
- ◆ 신속한 대비 필요하며, 특히 사고이력이 있는 업체는 재발방지에 각별히 유념

\* 기업이 안전·보건 의무에 소홀하여 근로자·시민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 
 경영책임자 형사처벌, 벌금,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 [주요내용 > 참고1]

## ■ (既시행) '22년 1월 27일 최초 시행,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2년 유예

- (기소사례) 징역형 집행유예가 다수이나 실형 선고로 구속된 사례도 존재

<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입건/처리 현황>

발생('22.1.1~12.31)	송치		내사종결	수(내)사 중	사건처리율* (송치+내사종결)/발생
	총	기소			
229건	34건	11건	18건	177건	22.7%

자료: 김앤장법률사무소

- (주요업종) '22년 한 해 기소송치된 34개 사건 중 제조/건설업이 90%에 육박

※ 제조업 16건(47.1%), 건설업 14건(41.2%), 기타업종 4건(11.8%)

- (판결경향) ①중처법 시행 전 사고발생·위반 이력\* 有 → 중형·실형 선고, ②벌금형보다 징역형 위주, ③최고안전책임자(CSO)미인정 경향\*\*(각자대표가 CSO겸직 시 예외)

\*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고발생 또는 안전조치 위반 이력

\*\* 모든 판례가 최종의사결정자인 대표이사를 기소, 추후 쟁점화 가능성은 열려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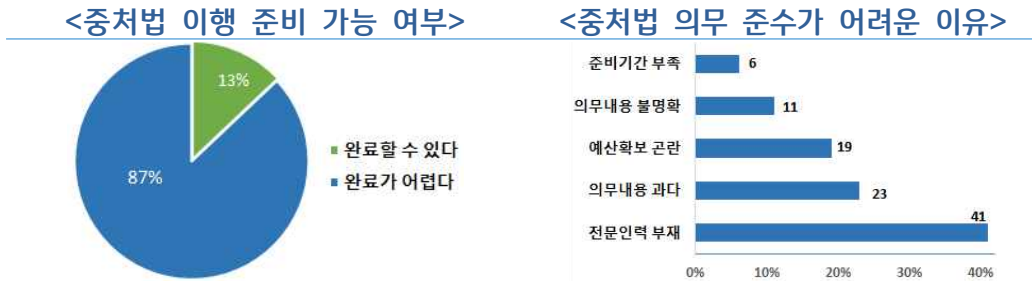
## ■ ('24.1.27~)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

※ 단,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미적용(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)

※ 상시근로자수 기준(일용근로자, 기간제근로자, 파견근로자, 외국인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)

- (적용규모) 고용노동부 추산 신규 적용 업체 83만여 개, 종사자 800만 명

- (주요이슈) 경영환경 악화 및 안전전문인력난 등으로 대상업체 대부분이 준비 미흡



자료 : 한국경영자총협회 ('23년 12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1,053개 기업 대상)

- (취약점) 문서작업에 취약한 인력구조\*, 안전·보건 컨설팅 비용부담 등

\* 중처법 의무이행은 서류 작업·기록·보관을 필히 동반, 사고 발생 시 서류로 의무 이행여부를 입증해야

### ■ (법안동향) 정부가 2년 추가유예 시도했으나 사전개정 합의 실패, 1월 27일 시행

<2년 재유예 개정안에 대한 여야 입장>

야당		조건부 협상	여당	2년 재유예 요구
조건1	2년 후 의무 적용 확약	▶		수락
조건2	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	▶		“부처 간 이견 조율 문제로 전 정부 조차 실패한 사례”로 협상 불가
조건3	재해예방 직접예산 2조원 상향	▶		既 확보된 안전 예산 충분하여 상향 곤란

- (사후개정 시나리오) 다만, 소상공인 여론의 악화 수준에 따라 제도 시행 후 타협안 (①계도기간, ②재유예, ③재유예·소급) 추진 가능성 있으나 총선 등의 이유로 불투명

시나리오	여야합의	가능시점	실효성	비고
① 계도기간*	불필요	즉시	低	실효성 낮음(인명사고 동반하는 중대재해 특성상 형사처리 불가피), 양형 수위에는 감안 가능
② 재유예	필요	본회의**	中	1/27~추가유예안 시행일 기간 내 발생사고 처벌 불가피, 양형 수위에는 감안 가능
③ 재유예·소급	필요		통과 후	高

\* 당사자 신고 시에만 수사, 훈방조치 등의 방법으로 입법초기 처벌을 완화하는 행정수단

\*\* 일정 : 2월 1일, 설연휴 직후 (3월 이후 총선 국면 본격화로 의사일정 난항)

### ■ (시사점) 유예 및 소급이 신속히 입법되지 않는 한 중소 영세업체 혼란 불가피

- (IBK) 중대재해 취약기업을 위한 안전·보건 컨설팅 제공 확대 등 적극적 지원 필요
- (기업) 의무이행의 신속한 준비 필요, 제조·건설업 및 사고빈발 업체는 각별히 유념

※ (가이드북)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-koshasafety.co.kr / (컨설팅) IBK 「ESG-산업안전」 컨설팅

- **(목적)** 근로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 발생시 실질 책임자\*를 처벌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,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유도

\*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 및 안전 확보를 위반한 법인·기관의 경영책임자

- **(보호대상)** 산업재해를 ①중대산업재해와 ②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규정

- **(산업재해)** 종사자가 주요 보호대상이며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면 계약형식(도급·용역·위탁 등)에 관계없이 대상에 해당

- **(시민재해)** 사업장에서 생산, 제조, 유통 중인 '원료나 제조물'의 이용자, 사업주가 운영하는 '공중이용시설·교통수단'의 이용자가 주요 보호대상

※ 다만,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소상공인, 교육시설,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 제외

※ 과거 '삼풍백화점 붕괴사고', '성수대교 붕괴사고', '가습기 살균제 사건' 등이 시민재해의 예

- **(의무주체)** 사업주 또는 사업을 대표·총괄하는 경영책임자 및 안전업무 담당자

※ 개인사업주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, 공기업,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 대상

- **(의무)** ①인력·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, ②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, ③정부·지자체의 시정 요구 이행 조치, ④안전·보건법 이행을 위한 관리 조치

- **(처벌수위)** 사망자 발생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, 법인 및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여

<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규정 >

중대재해 종류	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	법인(양벌 규정)
1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	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(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)	50억 원 이하 벌금
다수의 부상자(6개월 이상 치료) 또는 직업성질병자 발생	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	10억 원 이하 벌금

※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,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벌금 납부 부담 가능 단, 법인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·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 면책 가능

- **(징벌적 손해배상)** 중대재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손해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최대 5배 까지 부여

- **(적용예외)**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소상공인\*은 중대산업재해 미적용

\*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